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관광건설위원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9년 4월 1일
- 회부일자 : 1999년 4월 2일

3. 제안이유

도 사무의 시군위임사무중 도로과 소관 위임사무 일부가 '99. 2. 8 법률 제5894호로 도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규정과 관련한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그동안 현실과 불부합되고 있는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관련업무 추가 위임
 - 점용료 징수제한, 변상금 징수, 수수료 징수, 과태료 부과 징수
- 도로법 제50조 제5항 삭제에 따른 허가사항 삭제
 - 토지형질 변경 허가
 -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, 개축, 증축 등의 변경 허가
 - 축목의 재식, 벌채 허가
- 도로법 제35조 삭제에 따른 위임 사무 삭제
 - 교량, 도선시설, 지하도, 터널, 삭도의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징수

- 지방도 유지관리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환수
 -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
- 지방도 노선이 변경된 폐도로 부지 용도 폐지 권한 위임
 - 도유재산(도로)용도 폐지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그동안 현실과 불부합 되어 있던 사무를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,

그 주요골자로는,

첫째, 점용료 징수 제한, 변상금 징수, 수수료 징수, 과태료 부과징수 등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관련 업무를 추가 위임하고,

둘째, 도로법 제35조 및 동법 제50조 제5항의 삭제에 따른 위임사무와 허가사항의 조정

셋째,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의 업무 환수

넷째, 도유재산(도로) 용도 폐지 권한 위임 등

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위임사무를 전면 재조정하고 지방도 유지관리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환수하는등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